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정보의 이전

1. 양 당사국은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의 보호,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규제기관의 능력, 기술 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분야를 다루면서, 금융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는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자국의 규제 제도에 대한 수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¹

기능의 수행

2.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 처리 기능

나. 데이터 처리²,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¹ 이것은 특히, 투명성의 준수와 본국의 금융 규제기관에 대한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보고 요건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이전을 포함한다.

² 당사국이 제7.43조에 따라 자국의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 처리를 또한 허용한다.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관리 및 비서 업무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 관리 업무

마. 은행 계좌 조정, 예산 수립, 보수, 세금, 회계 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재산 회계를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 서비스 공급자는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에 적용 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5. 당사국의 우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그 당사국의 우편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 상의 우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6.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그러한 서비스가 자국의 영역에서 동종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실행 가

능한 한도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³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7.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 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 상의 우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당사국은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보험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동종 서비스에 자국이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8.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분야별 협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 능력 사안이 금융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자율규제기구

9. 한국보험개발원은 제7.40조 원칙의 적용대상이다. 이 확인은 이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 또는 다른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의 그 밖의 모든 기구의 지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0.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보험에 관련된 기능을 자율 규제기구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그 당국은 위임 받은 기능에 따

³ 이 약속은 우편서비스 공급자가 영국 내에서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영국에 또한 적용된다.

라 그 기구 또는 다른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제7.39조(투명성) 및 제 7.23조(국내 규제)제2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